

1. 개정이유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신청서 서식을 보완하고,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등 「지방세법」 개정('23.3.14.) 사항을 반영하여 주택 재산세 납세고지서 서식을 정비하며,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서 서식을 위탁자와 수탁자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는 등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보완(안 별지 제58호의3서식)
- 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 재산세 납세고지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59호의3서식)
- 다.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서 개선(안 별지 제64호의2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19. ~ 5. 9.) 진행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 제59호의3서식, 별지 제6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 년도)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

(앞쪽)

1. 납세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2. 주택 수 제외 (변경)신청 주택명세	(단위: m ² , 원)
------------------------	--------------------------

(1) 사원용·미분양·대물변제·상속/혼인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주택 유형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상속/혼인		
				④ 전용면적	⑤ 월세	⑥ 임대 보증금	⑦ 허가 구분	⑧ 사업계획승인일 (건축허가일)	⑨ 사용승인일 (사용검사일)	⑩공사대금 지급자		⑨ 사용승인일 (사용검사일)	⑪ 피상속인/배우자		⑫ 상속개시일 /혼인일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1															
2															
3															

(2) 인구감소지역 소재 신규 취득 주택·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 명세															
번호	⑬ 신고 구분	⑭ 소재지	⑮ 주택 유형	인구감소지역 소재 신규 취득 주택											
				⑯ 공시가격	⑰ 취득일										
1															
2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1세대 소유 주택 수 판단 시 제외할 것을 (변경)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작 성 방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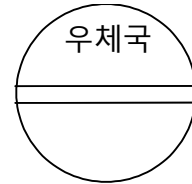
※ 이 서식은 최초로 1세대 소유 주택 수 판단 시 제외 주택 신청을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청한 자로서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제외 주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 ① 신고구분: 최초로 제외 신청을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청한 자로서 이미 신청한 제외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제외 신청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제외 신청한 주택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를 적습니다.
2. ② 소재지: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보유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③ 주택유형: 사원용주택은 “사원용”, 미분양주택은 “미분양”, 대물변제주택은 “대물변제”, 상속주택은 “상속”, 혼인 전 보유주택은 “혼인전 보유”를 각각 적습니다.
 - 가. 사원용주택: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나.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주택건축판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주택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다. 대물변제주택: 시공자가 주택건축판매업자(시행사)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 라.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마. 혼인 전 보유주택: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중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주택
 - 사.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문화재 주택, 노인복지주택은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확인하나 누락된 경우 소재지, 주택유형 기재
4. ④ 전용면적: 주택유형이 “사원용”인 경우에만 적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5. ⑤ 월세, ⑥ 임대보증금: 주택구분이 “사원용”인 경우에만 적고, 종업원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지급해야 할 월세(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종업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⑦ 허가구분: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각각 적습니다.
7. ⑧ 사업계획승인일(건축허가일): 주택유형이 “미분양”인 경우에만 적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을 적습니다.
8. ⑨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주택유형이 “미분양”과 “대물변제”인 경우에만 적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9. ⑩ 공사대금 지급자: 주택유형이 “대물변제”인 경우에만 적고,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시행사의 성명(상호) 및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를 적습니다.
11. ⑪ 피상속인/배우자, ⑫ 상속개시일/혼인일: 주택유형이 “상속”인 경우 피상속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상속개시일을 적고, “혼인 전 보유”인 경우 배우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혼인일을 적습니다.
12. ⑬ 신고구분: 최초로 제외 신청을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청한 자로서 이미 신청한 제외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제외 신청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제외 신청한 주택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를 적습니다.
13. ⑭ 소재지: 인구감소지역 소재 신규 취득 주택,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14. ⑮ 주택유형: 인구감소지역 소재 신규 취득 주택의 경우 “인구감소”,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 “무허가”를 각각 적습니다.
15. ⑯ 공시가격: 주택유형이 “인구감소”인 경우에만 적고, 공시가격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가액(과세기준일 현재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16. ⑰ 취득일: 주택유형이 “인구감소”인 경우에만 적고, 취득일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일을 적습니다.

※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의 주택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별지를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보내는 사람



바코드 18mm
음성 안내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주택 재산세

받는 사람

바코드 17mm
우편반송용

납 부 장 소

은 행 방 문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 상 계 좌

온 라 인

년 주택 기분 재산세

음성 안내
바코드 18mm

납부하실 금액

까지 납부 시

원

[기분]

① 산출세액	원
② 경감세액	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원
법 또는 조례 감면	원
③ 납부할 세액(①-②)	원

※상세안내 후면 참조

시군구	재산세	수납은행 확인용
-----	-----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

전자납부 번호	
------------	--

납기 내:	까지
-------	----

세 목	납기 내 세액
-----	---------

--	--

--	--

합 계	
-----	--

납기 후:	까지
-------	----

납기 후 세액	
---------	--

년 월 일

수납용
바코드
수납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시군구	년 (주택 기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 검 영수증
-----	---------------	---------------------------	----------------

납세번호	기관	세목	연월기	과세번호
------	----	----	-----	------

납 세 자
주 소

납세자번호

과세대상

수납용
바코드

세 목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	과세표준	납기 내
재산세				원
재산세(주택)				까지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원
지방교육세				까지
합 계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전자납부 번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구분

재산세(주택)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
가액비율

(=)

과세 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감면

(-)

세부담상한
초과액

(=)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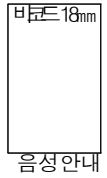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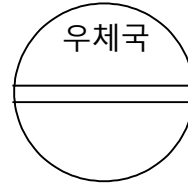
6천만원 이하

0.1%

0.05%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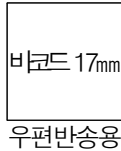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주택 재산세

받는 사람



자동납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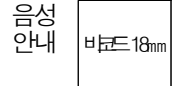
금융회사(신용카드회사)
예금주(소유주)
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
성명(법인명)
자동이체(납부)일

※ 납부기한 전에 예금 잔액 또는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예금 잔액 또는 한도가 부족하면 자동납부가 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확인한 후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 통지서

귀하(귀 법인)께서 납부하실 재산세는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신 예금계좌(신용카드)에서 해당 자동이체(납부)일에 자동납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주택 기본 재산세



납부하실 금액

원

[기본]

① 산출세액	원
② 경감세액	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원
법 또는 조례 감면	원
자동이체 세액공제	원
③ 납부할 세액(①-②)	원

귀하(귀 법인)께서는 자동 납부 신청자로서 이 납세고지서로는 납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군구	년 (주택 기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
납세번호	기관	세목	연월기 과세번호

납세자
주소

납세자번호

과세대상

세목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	납기 기한
재산세	재산세(주택)		까지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계			담당자 문의처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납부 결과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재산세(주택)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

(×)

공정시장가액비율

40%~80%(1세대 1주택의 경우 30~7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금액

(=)

(=)

과세표준

①, ② 중 작은 값
①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② 과세표준상한액

(×)

(×)

세율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

(=)

산출세액

재산세(주택) 산출세액

(-)

(-)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

(-)

세부담상한
초과액

공시가격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상한율	105%	110%	130%

(=)

(=)

납부할 세액

재산세(주택) 납부할 세액

재산세 부과 안내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가 부과되고,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까지) 그 지방세액의 0.66%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 납부지연가산세(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납부지연가산세(납기 내 지방세액 × 0.66% × 경과월수)

세부담상한제도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과표상한제

해당연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직전연도 시가표준액 등을 감안해 매년 설정된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크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 과세표준상한액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해당연도 과세표준 × 0~5%)

구제신청 기한 안내

이의신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0.14%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 60%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

20%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서

(앞쪽)

관리번호	접수 일자	처리기간	즉시		
납 세 의무자	① 성명(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③ 상호(대표자)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영업소)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위탁자 정 보	⑧ 성명(법인명)	⑨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⑩ 상호(대표자)	⑪ 사업자등록번호			
	⑫ 주소(영업소)				
수탁자 정 보	⑬ 성명(법인명)	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⑮ 상호(대표자)	⑯ 사업자등록번호			
	⑰ 주소(영업소)				
⑬ 재산종류	⑭ 재산소재지	⑬ 용도/구조(지목) 공부상 현 황	⑯ 면적 (수량)	⑰ 취득 일자	⑱ 신탁 목적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방법

□ 납세의무자란

※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
(단,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
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이 납세의무자)

-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위탁자 정보란

- ⑧ ~ ⑫: 납세의무자란의 ① ~ ⑤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습니다.

□ 수탁자 정보란

- ⑬ ~ ⑰: 납세의무자란의 ① ~ ⑤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습니다.

□ 과세대상란

- ⑬ 재산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⑭ 재산소재지: 재산세 과세 부동산 소재지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 ⑮ 용도/구조(지목): 주택과 건축물은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 등을 구분하고, 토지는 공부상과 사실상 지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⑯ 면적: 해당 부동산 등의 면적(㎡)을 적습니다.
- ⑰ 취득일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일자(신탁등기 신청일 등)를 적습니다.
- ⑱ 신탁목적: 관리신탁, 처분신탁, 개발신탁, 담보신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